



2024년 1월

제258회 임시회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해 시
(여성가족과)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년 1월 일

제출자 : 김해시장

1. 개정이유

둘째아 출산축하금 확대지원(50만원→100만원)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둘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지원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둘째아축하상품권 정의 신설(안 제2조)
- 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내용 신설(안 제4조)
- 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 범위 신설(안 제5조의2)
둘째아가 출생하여 김해시에 거주한 지 12개월이 되었을 때 지급
※ 2023년도 출생자는 김해시 거주 조건 제외(안 부칙 제2조)
-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기준 변경(안 제6조)
 - 둘째아 출산축하금 “100만원 → 50만원”
 - 둘째아축하상품권 50만원 지원
- 둘째아축하상품권 신청 서식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관련 :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원안동의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23. 12. 28. ~ 2024. 1. 17.(접수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1. 18.(서면심의)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둘째아축하상품권”이란 둘째아가 12개월이 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축하금 및 둘째아축하상품권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 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서 2023년 이후에 출생한 둘째아의 부모로 한다. 이 경우 둘째아의 부모는 둘째아가 12개월이 되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는 최대 50만원
2. 둘째아는 최대 50만원
3. 셋째아부터는 최대 100만원

- ② 둘째아축하상품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쌍생아 이상은 출생 순으로 각각 지원한다.

④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자녀의 수에 포함하여 출생 순위를 계산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축하금의 지원신청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해당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신청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둘째자녀가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자인 신고자에게 지원신청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기관의 공부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내용과 신청인의 주소
2.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의 경우, 받은 신청서를 읍면동에 보관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

1. 출산축하금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

2. 둘째아축하상품권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모바일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것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이 아닌데 거짓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환수 대장에 환수 이유와 날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단 표의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하단 표의 제목란 중 “출산 축하금 지급 대상 확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확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3년도 출생한 둘째아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5조의2 후단의 신설규정은 둘째아가 2023년도에 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환수 대장

연 번	신 청 인(보호자)				신 생 아				출산축하금 지원					비 고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출생 순위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예금주	금융 기관	계좌 번호	금 액	지급일	

둘째아 축하상품권 환수 대장

연 번	신 청 인(보호자)				둘째아			상품권 수령처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통신사	명의자	휴대전화	금 액	지급일	

※ 비고 : 환수 사유 및 날짜는 비고란에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둘째아축하상품권”이란 둘째아가 12개월이 된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사랑상품권을 말한다.</u></p>
<p>제4조(지원내용 등)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출산축하금 등 지원</u></p> <p>2. 3. (생략)</p>	<p>제4조(지원내용 등) ----- ----- -----.</p> <p>1. <u>출산축하금 및 둘째아축하상품권</u></p> <p>2. 3. (현행과 같음)</p>
<p>제5조(<u>지원대상자의 범위</u>) ① 출산축하금 <u>지원대상자</u>(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90일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부모는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여야 한다.</p>	<p>제5조(<u>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u>) ① -- ---- <u>지원대상자</u>----- ----- ----- ----- -----.</p>

② ~ ④ (생략)

<신설>

제6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급한다.

②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수를 포함하여 출생순위를 산정한다.

<신설>

<신설>

제7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 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서 2023년 이후에 출생한 둘째아의 부모로 한다. 이 경우 둘째아의 부모는 둘째아가 12개월이 되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는 최대 50만원
2. 둘째아는 최대 50만원
3. 셋째아부터는 최대 100만원

② 둘째아축하상품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쌍생아 이상은 출생 순으로 각각 지원한다.

④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자녀의 수에 포함하여 출생 순위를 계산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의 지원

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서를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해당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신청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둘째 자녀가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자인 신고자에게 지원신청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기관의 공부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내용과 신청인의 주소
2.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

결과 제5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적어 넣어 관리한다.

원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의 경우, 받은 신청서를 읍면동에 보관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

1. 출산축하금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

2. 둘째아축하상품권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모바일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것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자가 아닌데 거짓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환수 대장에 환수 이유와 날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

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시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추진·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등 지원
2.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제도 홍보
3. 그 밖에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90일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부모는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②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③ 출생일 현재 시에 부모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타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축하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하지 아니한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해외(산모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

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시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급한다.

②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수를 포함하여 출생순위를 산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서를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5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적어 넣어 관리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김해시 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
- 조례 개정 후 5년간 시비 2,265백만원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비 : 2024년 ~ 2028년까지 2,265백만원
- 연간 둘째출생아 900명 기준(상품권 수수료 포함)

나. 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둘째아 축하 상품권	2,265	453	453	453	453	453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예산편성 시 예산부서 협의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김해시 자체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인원은 출생자 수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가 변동 될 수 있음.

4. 작 성 자 :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							
세 출		2,265	453	453	453	453	453
출산축하금 지원		2,265	453	453	453	453	453
재원 조달		2,265	453	453	453	453	453
자체수입	소계	2,265	453	453	453	453	453
	지방세						
	세외수입						
	시비	2,265	453	453	453	453	453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1.23 조례 제1346호

(일부개정) 2023.02.23 조례 제19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3.>

1. “출산장려시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추진·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3.]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3.2.23.>]

제4조(지원내용 등)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등 지원
2.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제도 홍보
3. 그 밖에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2.23.]

[중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2.23.>]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90일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부모는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②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③ 출생일 현재 시에 부모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타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3.>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해외(산모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시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2.23.>

[제3조에서 이동, 중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3.2.23.>]

제6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

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급한다. <개정 2023.2.23.>

②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수를 포함하여 출생순위를 산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2.23.>]

제7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3.2.23.>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③ 신청인은 신청서를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2.23.>]

제8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5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3.2.23.>]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적어 넣어 관리한다.

<개정 2023.2.2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2.23.>]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
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시행하
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2.2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2.23.>]

부칙<조례 제1346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900호, 2023.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